

▶ 답안례

소 장

\*\*\* 소가 240,000,000원  
산출내역 1) 1차 차용금 2억원  
2) 2차 차용금 4,000만원

\*\*\* 인지액 1,015,000원  
계산내역) 240,000,000원 x 40/10,000 + 55,000

원 고 김상훈 (701104-1122333)  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 
전화번호 : 010-1234-7777, 전자우편 : ksh@kmail.com

피 고 하용주 (770201-1987654)  
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 
전화번호 : 010-4321-9876

대여금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1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0.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  2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1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  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  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피고에게 2017. 1. 1. 2억 원을 변제기 2018. 12. 31. 이자 월 0.5%로 정하여 대여하였고(이하 “1차 차용금”), 2018. 1. 1. 1억 원을 변제기 2018. 12. 31. 이자 월 1.5%로 정하여 대여(이하 “2차 차용금”) 하였습니다.
2. 피고는 이중 1차 차용금에 대한 2017. 12. 31.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지내오던 중, 2018. 12. 31. 위 1,2차 차용금 중 어느 차용금에 변제충당 한다는 합의나 변제충당의 지정 없이 9,000만원을 입금(이하 “이 사건 지급금”) 하였습니다.
3. 그러므로 2018. 12. 31.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법정 변제충당하면 아래와 같습니다

( 아 래 )

가. 1차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1.부터 2018. 12. 31. 까지 월 0.5%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,200만원과 2차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1.부터 2018. 12. 31.까지 월 1.5%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,800만원이 존재합니다.

나. 그런데 위 1,2차 차용금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고, 1차 차용금의 이율은 월 0.5%인 반면 2차 차용금의 이율은 월 1.5%이므로 2차 대여금 채무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 더 많은 채무에 해당하므로,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은 2차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우선충당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다만, 위와 같이 충당하는 경우에도 이자 채무 등 부수적 채무가 딸린 복수 채무의 법정충당의 경우,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, 이 사건 지급금은 위 조항에 따라 1차 차용금에 대한 위 약정이자 1,200만원 및 2차 차용금에 대한 위 약정이자 1,800만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잔액 6,000만원(=9,000만원-1,200만원-1,800만원)을 2차 차용금의 원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면 잔액은 4,000만원(=1억원-6,000만원)이 됩니다.

4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월 0.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2차 차용금 잔액 4,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.5%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5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**입 증 방 법**

1.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
2.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
3. 갑 제3호증의 1 내지 2 변제요청서 및 변제요청에 대한 답변서
4. 갑 제4호증 입·출금 거래내역

**첨 부 서 류**

1. 위 입증방법 각 2통
2. 소장부분 1통
3. 송달료 납부서 1통
4.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1통

2019. 9. 21.

위 원고 김상훈(인)

서울중앙지방법원

귀중